

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 심사세칙 개관: 연구 부정행위와 출판업적을 중심으로*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 심사세칙(2009) 가운데 ‘연구 부정행위’ 및 ‘출판업적’ 관련 세칙을 비판적으로 개관하였다. 먼저, 연구 부정행위 관련 세칙의 내용을 개관하고 자료의 위조 및 변조, 표절, 이중출판과 관련된 세부 쟁점 사항 및 미해결 과제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출판업적 관련 세칙을 개관하고, 관련 사례들을 통해서 저자 인정 및 저자 표기 순서에 관한 쟁점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연구 부정행위와 출판업적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연구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연구진실성, 연구 부정행위, 출판업적

* 본 논문에 제시된 일부 내용은 2009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연구윤리교육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다.

†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 3가 53
Tel: 010-7474-0494, E-mail: hchoi@skku.edu

한국심리학회(2009)에서는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이하 ‘세칙’)을 제정하여 회원들이 수행하는 심리학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 진실성 관련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연구 윤리 및 연구 진실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학계와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심리학회의 세칙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고 학회의 세칙을 개관한다. 첫째, ‘연구 부정행위’(제 2조)와 관련된 세칙의 내용을 개관하고 쟁점 사항 및 미해결 과제를 분석한다. 둘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판업적’(제 3조)에 관한 세칙의 내용을 개관하고, 유관 사례를 통해서 저자 인정 및 저자 표기 순서와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논의한다. 셋째, 연구 부정행위와 출판업적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연구 진실성을 담보하는데 요구되는 과제들을 논의한다(운영 세칙 전문 및 이에 대한 개관은 특집호의 김혜숙 교수 논문 참조).

연구 진실성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학회의 기준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학회의 세칙은 연구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본 지침(guiding principle)의 성격을 지닌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 부정행위 및 출판업적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필자가 소개하거나 제안하는 기준들 역시,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준수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연구 진실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하여 학술 공동체에서 비교적 심층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져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공감하며 준수하고 있는 일종의 묵

시적 규약이나 관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본고는 세칙의 내용 가운데 필자의 관점에서 가려낸 주요 쟁점 사항에 초점을 두고 세칙을 비판적으로 개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현재 세칙이 부적절하다거나 실효성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세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미해결 과제를 분석해보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연구 부정행위

세칙(제 2조)에서 연구 부정행위는 주요 부정행위와 부적절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주요 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및 ‘이중출판’으로 규정한다. 부적절 행위는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조사방해 행위’, ‘연구비 부당 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주요 연구부정행위의 직접적 결과인용’을 포함한다. 아래에서는 주요 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와 관련된 세칙의 세부 내용과 필자가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 사항들을 살펴본다.

주요 부정행위

주요 부정행위 가운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제 2조 1-1)로, 그리고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제 2조 1-2)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위조’나 ‘변조’는 거의 전적으로 연구자의 양심과 윤리의식에 맡겨야만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 진실성

세칙만으로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행위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조’나 ‘변조’의 문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에 더해서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자 윤리규정(2003)에서 제시하는 연구 결과보고제(32조) 및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 자료 공유제(36조) 관련 지침, 그리고 연구자들에 대한 소양 교육 및 연구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토양의 마련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위조’나 ‘변조’와 같은 행위는 사후적 대처보다는 그러한 행위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제지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통합적 지침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세칙의 내용을 확장하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다. ‘위조’ 및 ‘변조’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변형, 삭제”는 자료를 변조하여 연구 결과를 특정 방향으로 왜곡하는 행위로 국한시키고, 통상적 기준에 의한 자료 삭제 및 변형(예: 표준 절차에 의한 극단치의 제거나 분포 교정 등)은 ‘변조’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와 관련된 일반의 오해나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조’ 행위 가운데 “연구 재료, 장비, 과정의 인위적 조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현재보다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 세칙에 규정한 인위적 조작이 연구자가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연구 재료나 장비, 과정을 조작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계에서 공인된 일종의 표준 절차와 달리 연구자가 임의로 재료나 장비, 과정을 운용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 물론 후자의 경우 해당 학술지에서 방법의 적절성과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므로, 이 과정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 있다면 세칙에 굳이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문제는 학술지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심리학 연구에서 첨단 기계나 장비의 활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구 재료나 장비의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지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부정행위로 규정된 ‘표절’(제2조 1-3)이나 ‘이중출판’(제2조 1-4)의 경우 세칙에서 매우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세칙의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의 관행과 현재의 기준 간에 괴리가 크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을 과거의 학술적 성과물에까지 적용할 것인지 또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세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이중출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고 학계의 동의된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적, 비윤리적 이중출판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선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칙 제정 이전의 연구 성과물과 관련하여 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중출판’ 관련 규정 가운데 내용의 중복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일부 발견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발표할 경우

‘인용표시가 있는지’(제2조 1-4-1), ‘독자층이 다른지’(제2조 1-4-6), 그리고 ‘다른 언어로 제출한 학술지 편집장의 사전 동의 획득’(제2조 1-4-7) 등 다양한 기준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이 기준들 간의 위계관계나 포섭관계를 고려하여 세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논문의 일부나 전문을 학술대회 자료집에 실는 경우, 그리고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나 학술대회 논문집에 게재하는 경우 등도 이중출판의 예외 사항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통상 학술대회 논문집이나 연구보고서 등은 연구 업적의 측면에서 학술지 논문과 동일 선상에서 평가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따라서 학술대회 논문집이나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이중출판 논쟁의 소지는 크지 않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학술대회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을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남아있다. 따라서 학술대회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침도 마련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적절행위

세칙에서 부적절행위(제2조 2항)는 “주요 부정행위처럼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주요 부적절행위에 관한 세칙의 내용 가운데 필자가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칙에서 규정하는 부적절 행위 가운데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제2조 2-1) 관련 사항

은 세칙의 출판업적 관련 사항(제 3조)과 중복되므로, 다음 장에서 출판업적 관련 세칙을 개관할 때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학술 연구자나 일반인,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나 정부당국에서 과연 주요 부적절 행위를 주요 부정행위보다 덜 심각하다고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해당 부적절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의 주체, 처벌의 범위, 처벌 유형 및 크기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특히 ‘연구비 부당사용’(제2조 2-3)의 문제는, 학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사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이나 연구소, 그리고 정부 유관부처 간에 통합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보기에 현 세칙은 연구 부적절행위가 주요 부정행위에 비해서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학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세칙에서 ‘연구결과의 과장홍보’(제2조 2-3)를 주요 부적절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장홍보’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연구자마다 자신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홍보하는 방식에서 선호가 다르고, 특히 연구 결과의 왜곡이나 위조/변조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부적절 행위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 추가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관련 문제 사례에 대한 연구진실성 심사 기준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주요 연구부정 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제2조 2-5)과 관련된 세칙의 내용 역시 세칙의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

시행세칙은 2009년 2월 25자로 시행되었으며, 세칙의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명시적 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특정 연구자가 2009년 2월 25일 이전에 보고된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을 때 그 결과의 위반 여부를 현 세칙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연구부정과 관련된 학회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에 발표된 일부 논문이나 저서 가운데 선의의 피해사례가 다수 있을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하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세칙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세칙에서 “주요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해야한다”는 내용 역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판업적

출판업적과 관련하여 세칙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제3조 1항)고 규정하여 저자로서의 책임과 업적 인정에 관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판물에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 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되며(제3조 3항), “학술적, 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고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제3조 4항)고 상세히 규정하였다. 또한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 등을 모두 ‘연구부적절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2-1).

필자가 보기에 출판업적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누군가를 저자로 인정할지의 문제와 저자표기 순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집약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세칙에서 ‘학술적, 전문적 기여’를 바탕으로 출판물 저자로서의 책임과 업적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와 관련된 세부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오해나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관행 및 연구자들의 선호 등을 감안할 때 세칙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측면도 있다.

우선, 특정 연구자로부터 ‘상당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세칙에서 제시한 세부 사례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이를 ‘상당한 기여’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은 Fine과 Kurdek(1993, p.1145)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전문성을 수반하는 제반 연구행위를 누적적(cumulative)으로 고려하여 연구 기여도를 가늠하는 것이다. 이 연구자들은 또한 저자 인정 여부는 연구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양보다는 연구에 대한 전문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이에 덧붙여, 필자가 보기에는 ‘특정 연구자의 총체적 기여가 없었다면 연구를 완수할 수 있

있을 것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저자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세칙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여'가 아닌 소위 '작은 기여'(제3조 3항)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세칙에 명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심리학회(2001)에서는 연구 재료나 도구의 제작, 자료수집, 자료입력,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작, 연구 참가자 모집 등의 행위는 저자 인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기여들의 총합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기여가 없이 연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된다면 저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유사하게,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단순 자료처리나 문헌조사, 행정 보조, 검사의 실시, 타이핑 등은 통상 전문적, 학술적 기여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조: Bridgwater, Barnstein, & Walkenback, 1981; Shawchuck, Fatis, & Breitenstein, 1986).

저자 인정 및 저자 순서의 결정과 관련된 세칙의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또 다른 상황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이다. 세칙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되지만, "학위 논문을 대폭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5항). 누구나 짐작하듯이 '예외적 상황'에는 세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 논문의 대폭 수정'과 '추가 경험자료 수집'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학위 논문 연구의 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 그리고 집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논문 지도교수의

역할이나 개입 정도, 학생과의 상호작용 양식, 학생의 주도성 및 준비도 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 마련된 세칙으로 이러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을 충분히 포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점에서,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출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형적 사례들을 상정하고 저자 인정 및 저자 순서 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들을 탐색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Fine과 Kurdek(1993, pp.1141-1142)이 제시한 사례들을 필자가 한국 실정에 맞게 개작하여 그들이 각 사례의 쟁점 별로 제안하고 있는 기준 및 필자의 견해를 소개하기로 한다(논문 저자 관련 유사한 쟁점들은 Bridgwater, et al., 1981, Shawchuck et al., 1986, Spiegel & Keith-Spiegel, 1970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례 1]

임상심리 박사과정생인 K는 수련 중인 병원에서 psychopath에 관한 박사학위논문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문제와 연구설계는 K가 병원의 수련 감독관인 S박사와 함께 공동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K가 소속된 심리학과 T교수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S박사, K의 심리학과 교수인 H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했다. 학위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후, 심사위원장이었던 T교수는 K에게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자고 제안했다. K는 논문의 초고 및 수정본을 집필하고, T교수는 집필 과정에서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하고, 병원의 S박사는 초고가 완성되면 이를 검토하는데 동의했다. 학술지에 제출한 초고에서는 K, T교수, S박사 순서로 저자를 명기했

다. 그러나 학술지 게재를 위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K는 더 이상 논문을 수정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음을 T교수에게 알려왔다. 결국 T교수가 최종 논문을 완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T교수는 자료를 재분석하거나 추가 분석을 실시했고, 심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초고를 수정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Fine & Kurdek, 1993에서 개작).

위 사례에서 저자 인정 여부의 결정, 그리고 저자 순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가? 우선 한국심리학회의 세칙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학생인 K의 학술적, 전문적 기여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을 듯하다. K는 연구문제의 발굴, 연구설계, 자료수집, 초고완성, 및 논문 수정 작업 등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학술지 논문에서 K를 저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수련 감독관인 S박사의 저자 포함 여부는 논문의 완성 과정에서 그가 제공한 학술적 및 전문적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며, 만약 그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 3저자로 명기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사례에서 핵심 쟁점은 K에게 제1저자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Fine과 Kurdek(1993)은 이 상황에서 만약 K가 애초에 동의했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그가 여전히 제1저자 자격이 있다고 동료 연구자들이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결정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p.1146).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는 그 반대의 입장, 즉 만약 애초에 T교수가 제1저자가 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가 동의했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제1저자의 지위를 다른 연구자에게 부여했을 것인가의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원 논문의 대폭수정이나 자료의 재분석, 추가의 경험자료 수집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여러 차례의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자 순서의 결정은 공동으로 논문을 집필하기로 동의하는 시점에서 공동저자들 간에 명시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저자 순서를 변경할지 등에 관하여 분명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문화에서 지도교수와 학생 간에 저자 순서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나 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학생이 이러한 논의와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학계의 관행과 규약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것 역시 지도교수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사례 2]

석사과정생인 W는 한두 가지 병이 있는 사람이 질병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자신의 학위논문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도교수인 T교수에게 전달했다. T교수는 W가 제안한 연구문제가 흥미롭고 잠재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W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W는 시초 연구문제를 제안하기는 했지만, 연구설계, 자료분석 및 해석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 따라서 T교수가 연구 방법을 고안하여 지도하고, W는 T교수의 지도와 감독 하에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입력을 마쳤다. 통계분석의 일부는 T교수가 직접 하기도 했고, 일부는 T교수의 지도하에 W가 수행했

다. 그리고 연구의 이론적 배경 구성부터 논문 집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T교수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졌으며, W가 작성한 학위논문의 일부는 T교수의 조언과 권고 사항 등을 토대로 완성되었다. 논문 완성 후 T교수는 W에게 학위논문을 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자고 제안했고 W는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T교수는 W가 학술지 논문을 완성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직접 논문 수정 작업을 했고, 투고된 최종본은 W가 쓴 학위논문의 약 3분의 1정도를 포함했다(Fine & Kurdek, 1993에서 개작).

위 사례에서 학생인 W와 지도교수인 T는 모두 저자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학생인 W의 기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지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연구의 진행과 완료에 있어서 W의 총체적 기여가 충분하며 W의 기여 없이는 연구를 완수하기 어려웠음을 감안하면 W는 저자 자격을 부여받아 마땅하다. 여기서도 문제는 누가 제1저자가 되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Fine과 Kurdek(1993, p.1146)은 학생이 자신의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학술지에 출간하고자 하는 관심과 동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자들은 만약 학생이 자신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의 대부분을 스스로 감당할 의사가 있다면, 학생에게 제1저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로 하여금 논문 집필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학생이 자신의 논문을 학술지에 출간하고자하는 동기는 충분하나 논문의 집필

및 논문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Fine과 Kurdek(1993)이 제안하는 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지도교수는 그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을 돕고 조언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 또한, 지도교수와 학생의 학술적, 전문적 기여도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자 간에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기여가 이루어졌는지를 가늠할 때는 학술적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낮은 수준의 기여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기준은 다분히 학생의 학문적 발전과 성숙을 학위논문 지도의 목표로 삼고 있는 연구자들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생과 지도교수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책임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 간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학생이 제1저자로서 학술지 논문 작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나 논문 완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지도교수는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상식 수준에서 연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알기에 외국의 경우 연구자들이 통상 2년 정도를 암묵적 기준으로 사용하지만, 여기에도 다양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사전에 협의된 기간 내에 제1저자가 맡은 바 역할을 완수하지 못하면, 논의를 거쳐 저자표기 순서를 조정하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놓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학생이 논문 출간에 관심과 동기가 없다면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고 학생은 제2저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경우 각주에 해당 논문이 학생의 학위논문을 토대로 완성되었음을 명기하는 것이 관례이며, 한국심리학회 세칙에서도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제3조 6항). 앞의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저자 표기 순서는 최종 논문의 완성 과정에서 저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최종 논문에 대한 학술적, 전문적 기여도를 따르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현재 세칙에서 ‘예외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결여한 채, 학위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논문은 학생을 제1저자로 표기한다는 지침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이와 유사한 견해는 본 특집호의 김혜숙 교수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례 3]

T교수는 동료 연구자인 L박사와 집단 창의성에 관한 연구를 기획하여 일련의 연구를 진행중이었다. 석사과정생인 O는 평소 집단 창의성에 관심이 있었고, 집단 창의성 연구로 학위논문을 작성하기를 희망했다. O는 T교수에게 자신의 희망을 전달했고, T교수는 O를 자신과 L박사의 연구에 참여시켰다. T교수는 O에게 관련 문헌을 지도했고 자신이 수행중인 연구 가운데 일부를 확장하여 O에게 연구문제를 제시해주었다. O는 T교수의 지도하에 문헌을 개관하고 새로운 논문들을 발견하여 추가로 학습하여 이를 T교수와 공유했다. O는 T교수와 L박사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했고 자료처리는 대부분 T교수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스스로 대안적 분석 방법을 강구하여 T교수와 논의하기도 했다. 논문의 집필은 T교수의 철저한 지도아래 이루어졌으며 O가 작성한 학위논문의 상당부분은 T교수의 조언과 추천, 그리고 권고 사항 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후 T교수는 O의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T교수는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료의 일부를 재분석했고, L박사와 공동으로 최종 논문을 집필했다. O에게는 학술지 논문 집필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설명했고 O는 이에 동의했다. 따라서 O는 학술지 투고논문의 작성 과정에는 기여하지 않았다. 학술지 논문 집필 과정에서 L박사는 T교수가 완성한 초안을 읽고 가설 도출의 배경 및 일부 결과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전문적 조언을 제공했다(Fine & Kurdek, 1993에서 개작).

위 사례에서 O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우선,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기여’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예: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결과해석 등)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결여되어 있고, 학위논문의 집필역시 지도교수의 실질적 기여가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고 짐작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O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 반면에, 앞에서 언급한 누가적 기여의 측면에서 보면 O는 T교수가 모르고 있던 새로운 문헌을 찾아서 연구 배경을 확충하는데 일부 기여했고 자료처리 과정에서 제한적이거나 주도

적 역할을 했으며, 학위논문을 직접 집필하는 등의 최소한의 전문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Fine & Kurdek, 1993, p.1146).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O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례에서 연구의 전반적 진행과정에서 지도교수인 T와 공동 연구자인 L박사의 전문적 기여도에 비해서 학생인 O의 전문적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L박사와 O의 전문적 기여도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지의 여부는 T교수의 판단에 달려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상대적 전문성이 낮은 연구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낮은 수준의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O는 제2저자로 그리고 L박사는 제3저자로 표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논문의 최종 완성에 있어서 L박사가 제공한 조언이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판단된다면 O를 제3저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례에서 T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T교수가 택한 방식은 학생의 성장기회를 다소 제약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으며, 과연 이러한 방식이 교육 훈련 장면에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T교수의 문제해결 방식은 가정에서 부모, 또는 직장에서 상사가 자신의 판단 기준과 상식에 기초하여 자식 또는 부하 직원과 관련된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는 경우와 흡사하다.¹⁾ 이러한 방식은 학생의 준비도, 능력, 동기 등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학생의

역량이나 동기 수준이 신뢰롭고 타당한 지적 성과물을 독립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T교수의 결정은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O가 일정 정도의 유능성과 학업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학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T의 일방적 결정방식은 O의 지적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사례에서 O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O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O가 아직 연구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독립적, 자율적으로 학술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O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례에서도 역시 학생에게 논문 연구 및 논문 출판 과정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지도교수의 의도와 견해를 사전에 전달하고, 학생이 상황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례 4]

석사과정생 Y는 수업, 논문, 지도교수 면담, 동료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서 e-mail을 통한 정서의 표현과 정서 탐지를 학위논문 주제로 정하고, 잠정적 연구 가설을 설정하여 지도교수인 T교수에게 제안했다. T교수는 Y에게 연구가설의 도출 배경을 보완하고 연구방법을 모색해보라고 제안했고, Y는 관련 문헌과 자료 탐색, 유관분야 연구자와의 교신 등을 통해서 비교적 정교한 연구 가설을 도출하고 연구방법의 초안도 마련했다. 이후 T교수의 지도하에 가설 도출 배경을 확충하고 연구방법을 정교화

1) Fine과 Kurdek(1993, p.1143)은 이 상황을 '부모식 권한 행사'(parentalism)에 입각한 기준으로 지칭한다.

하여 실험을 실시했다. 통계분석은 일부 T교수가 직접 하기도 했지만, T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대부분 Y가 수행했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Y는 다양한 분석의 틀과 기법을 탐색하여 시도했고, 결과 해석 과정에서 T교수의 조언을 받았다. T교수는 Y의 초고를 몇 차례 교정하고 feedback을 제공했고, Y는 이를 바탕으로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학위논문 작성했다. Y의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과정에서 Y의 경험부족을 고려하여 T교수가 논문 초고를 집필하기로 했고, 학생인 Y를 제1저자로 그리고 자신은 제2저자이자 교신저자로 명기했다. 학술지 심사결과 ‘대폭 수정 및 추가 경험연구 첨가’로 판정되었고 T교수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논문에 새로운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보완했다. Y는 논문의 보완 과정에서 추가의 문헌을 발굴하고, 대안적 해석가능성을 제시하는 등의 기여를 했다. 또 다른 대학원생 S는 추가 실험의 실험자로 도움을 주었다. 최종 논문에는 Y의 학위논문 자료와 S의 도움으로 추가 수집한 자료가 포함되었다(Fine & Kurdek, 1993에서 개작).

위 사례에서 Y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리라고 본다. Y는 세칙에서 규정한 대부분의 전문적 기여를 했고, 연구의 개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Fine과 Kurdek(1993, p.1146)은 위와 유사한 사례들에서 핵심 쟁점은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생인 Y와 지도교수인 T가 기존의 결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발생했음을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상황에

서 학생인 Y를 논문의 수정과정에서 배제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논문 수정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논문 수정과정에서 Y가 충분히 전문적 기여를 했다면 기존의 결정대로 Y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저자 표기 순서를 얼마든지 재조정할 수 있다.

필자도 Fine과 Kurdek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제안은 극히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박사과정 이상의 학생이나 공동 연구자들에게 적용 가능하리라고 본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앞의 [사례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이 주도적으로 논문 수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사례에서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T교수가 S의 도움으로 수집한 추가의 자료가 논문의 출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추가 경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학생인 Y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추가의 경험자료 수집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리라고 본다.

추가 실험을 실시한 S를 공동 저자로 인정할지의 여부는 S의 기여가 ‘전문적 기여’에 준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앞에서 소개한 대로 자료수집에 국한된 경우에는 전문적 기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교신저자를 누구로 명기하느냐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논문의 경우 논문 지도교수가 교신저자가 되어 심사 과정에서 학술지 편집위원

회와의 의사소통을 권장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과 지도교수가 모두 교신저자가 될 수도 있으며,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지도교수의 전문적 기여도 및 개입 정도에 따라서 학생이 교신저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 가지 추가로 언급할 점은, 논문에서 제1저자의 결정 여부는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어느 한 사람이 완전하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지닌다거나, 또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거나 열등함을 따지는데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보다는 연구 문제의 발굴, 연구의 설계 및 수행, 집필, 연구의 지속 및 다른 연구자들과의 학술적 교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식의 발견과 진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공동 연구자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서 진실되게 협력하고, 사전에 협의된 기준에 따라서 전문적 기여도와 실질적 책임 및 역할 등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저자 표기 순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 고려사항 및 결론

앞에서는 필자가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연구 부정행위 및 출판업적과 관련된 세칙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였다. 거듭 언급하지만, 현 단계에서 학회의 세칙은 연구 부정행위 및 출판업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가 쟁점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은 장차 세칙을 확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현재 세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만 연구 공동체에서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고 연구자들 사이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세칙의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추가적 사항들을 간추려 제시한다. 먼저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수 있는 몇 가지 쟁점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가 방대하거나 연구 자원 확보 등의 현실적 이유로 하나의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경우, 동일한 표집에서 얻어진 자료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나누어 출판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자료를 분할하여 복수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지침, 그리고 관련 근거의 마련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둘째, 현재 세칙에는 동일 연구자가 집필한 논문이나 저서 간, 그리고 논문과 학술저서 간 내용 중복에 관련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절’은 모두 타인의 연구 성과물을 인용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중출판’은 논문이나 저서의 전체를 반복적으로 출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신이 과거에 출판한 내용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이후 다른 출판물에서 인용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국내외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한편으로는 부당하게 자기-표절(self-plagiarism) 시비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 자기-표절행위가 만연할 위험도 있다.

셋째, 정부와 민간 및 기업체를 포함한 각종 연구비 지원 기관의 연구비 지원관련 심사에 참여하거나 학술지 투고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심사자 본인의 연구

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주요 연구부정행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자 윤리규정*(제37조)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윤리규정에만 둘 것이 아니라 연구 진실성 판단의 기준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 자료 활용과 관련된 ‘표절’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세칙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정보와 지식의 무한복제 및 악의적 변형이 얼마든지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전통적인 출판물을 상정한 표절 기준만으로는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섯째, 표절의 기준을 논문이나 저술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각종 검사나 척도, 연구 도구, 치료기법이나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임상이나 상담, 동물연구 등에서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사안들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세칙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출판업적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 우선, 금전적 보상의 지급 여부(예: 연구조교, 자료수집자 수당 등)를 저자 인정 기준과 어떻게 관련지을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통상 금전적 보상의 여부와 저자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관례이다(Fine & Kurdeck, 1993). 따라서 금전적 보상으로 저자 인정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세칙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대회 발표에서의 저자표기 순서와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학술지에 출간할 때의 저자표기 순서와 관련해서도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알기에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을 제1저자로 표기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전문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와는 비교적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관행이다. 또한 교육과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대학원생에게 발표하도록 하는 경우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학술지 논문에서의 저자표기 순서는 앞에서 소개했던 전문적 기여도가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학술대회 발표 당시의 저자표기 순서가 이후 학술지 논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학술대회 논문을 학술지 논문과 동일 선상에서 평가하지 않는 국제적 관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학위 논문이나 여타의 학술 논문을 완성한 학생이 지도교수를 참여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행위를 부적절행위로 볼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놓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수의 연구를 하나의 논문으로 묶어서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제1저자 선정의 기준에 대해서도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상 다수의 연구를 하나의 논문으로 완성할 때에는 연구자가 몇 개의 연구에 기여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연구를 모두 포함하여 총체적 기준에서 전문적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추가적 고려사항들 이외에도 학회의 세칙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실질적으로 심리학 연구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심층 수준의 논의와 유관 단체 및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연구진실성과 관련하여 각 학

회마다 기준이 다르고, 해당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이나 기관의 기준도 천차만별이며, 심지어 정부 유관부처들 간에도 일관된 입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문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나 대처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 한계 때문에 언론기관의 임의적 기준이나 일반의 오해가 여과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을 위시한 각종 기관과 일부 대학에서 연구 진실성과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고 통합적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심리학회와 분과학회들을 중심으로 연구 윤리 교육을 위한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자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1세기 심리학의 발전과 사회적 역할 증대를 목적으로 APA(2004)가 마련한 PSY21 강령에서 ‘책임있는 연구의 시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 진실성의 문제영역에 있어서도 현재의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벗어나서 보다 확장되고 정교한 영역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참고로, 미국심리학회의 경우 연구 진실성 기준은 정부기관인 Office of Research Integrity(ORI)에서 규정한 제반 문제 영역들(연구자간 협력, 이해관계의 조정, 자료수집/관리/공유/소유권, 연구참가자 관리, 동물연구, 멘토링, 심사, 출판업적 및 저자 결정, 연구부정행위)의 맥락에서 일관되고 통합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http://www.apa.org/science/rcr> 참조). 한국심리학

회에서도 2003년 심리학자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연구진실성 심사세칙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재구조화하여 연구 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일관된 규정체계를 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해볼만 하다(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 특별호의 김혜숙 교수의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 진실성 세칙은 문제 사례 발생을 제지하는 기능과 전반적 연구 진실성의 증진을 위한 토양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형태의 규정이 가장 이상적인 규정이 되리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연구 진실성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해당 부정행위 사례를 식별해내고 저자 표기 순서와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 진실성은 어떻게 하면 진실성이 담보된 연구 행위를 통해서 학술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과학의 진보를 추구하며 인간의 복지에 기여할 것인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심리학 연구자들이 연구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학술 공동체의 건전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자로서의 권리라고 볼 수도 있다.

참고문헌

- 한국심리학회 (2003).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자 윤리규정.
- 한국심리학회 (2009). 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 심사운영세칙.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The*

-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4). *The PSY21 initiative*. (on-line source: <http://www.apa.org/science/psy21.html>)
- Bridgewater, C. A., Bornstein, P. H., & Walkenback, J. (1981). Ethical issues in the assignment of publication credit. *American Psychologist*, 36, 524-525.
- Fine, M. A., & Kurdek, L. A. (1993). Reflections on determining authorship credit and authorship order on faculty-student collaborations. *American Psychologist*, 48, 1141-1147.
- Shawchuck, C. R., Fatis, M., & Breitenstein, J. L. (1986). A practical guide to the assignment of authorship credit. *The Behavior Therapist*, 9, 216-217.
- Spiegel, D., & Keith-Spiegel, P. (1970). Assignment of publication credits: Ethics and practices of psychologists. *American Psychologist*, 25, 738-747.
- 1차원고접수 : 2009. 10. 10.
수정원고접수 : 2010. 3. 3.
최종게재결정 : 2010. 3. 5.

A Critical Analysis on the KPA's Review Procedures for Research Misconduct and the Assignment of Publication Credit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paper provides a critical analysis on the KPA's(2009) review procedures for research integrity with a special emphasis on research misconduct and the assignment of publication credit. In so doing, several unresolved issues related to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research misconduct were identified, and recommendations were offered. Using relevant cases provided by Fine & Kurdek (1993), key issues in assigning authorship credit and determining order of authorship in publication were also discussed. Finally, general guidelines and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and promoting research integrity in the psychological community were discussed.

Key words : *Research integrity, Research misconduct, Publication credit.*